

③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으로 말한다.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지인추천 등을 통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
2. 지역 언론매체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유인물 배포
3. 수급자가 거주 지역 유인물 배포
4.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취약계층 지원강화
5.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기관 추천 유도
6. 기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7. 기존 계약자의 지인 소개 및 추천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인정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의사소견서제출) → ③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계약체결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상담 및 이용 계약서 작성 → ④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 등록 → ⑤근무자선정 및 면접 → ⑥서비스 제공 → ⑦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제20조(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주민센터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욕구,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필요내용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4. 계약체결 : 신청자(수급자)에게 급여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계획서대로 수행할수 있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후 서비스 품질 개선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①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자(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 ③ 급여제공 기간 중 등급 변동, 또는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만약 보호자가 재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월 본인부담금 청구서로 갈음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 케어 및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5.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⑦ 수급자의 성희롱으로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3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1부를 제공한다.
-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제2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시간은 급여제공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당일의 신체 상태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근무자가 조정할 수도 있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2항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

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거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항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가사활동 지원(취사,청소,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 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 1회 3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3시간 이상 연속 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 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4항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입욕시에는 방문차량 미이용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제5항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

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는 근무자와 협의 후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제6항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항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SNS로 통보한다.
2.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입금(은행 예금주:) 또는 현금으로 10일전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으로 발급한다.
4.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급한다.

제7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절 방문요양

제23조(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복지용구
--	--	-------------------------------	--------------------------------	-------------------------------

당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일상 활동지원 등)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
3. 봉사활동지원(재가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에 봉사요원을 연계)
4.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4조(서비스의 세부내용)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가사 및 일상생활, 인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일상생활지원)

- ①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②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 ③ 우애서비스(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영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영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 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
 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근무자는 방문할 때마다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유니폼착용) 근무자는 급여자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앞치마)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안전준수) 근무자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지사항)

1.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
 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가족에 대한 식사
 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
 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미만 제공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 등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옷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겹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90분 미만 제공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족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25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26조(안전준수)

근무자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7조(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서비스 제공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약정된 협력병원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방문요양 시간당 급여비용

시간	금액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86,48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77,970
차량미이용 60분 이상	48,690
차량 미이용 40분 이상	38,950
방문간호	
15분 이상~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60분 미만	52,310
60분 이상	62,930

단기보호(1일당)

분류	금액
1등급	71,970
2등급	66,640
3등급	61,560
4등급	59,940
5등급	58,300

시설급여(1일당)

분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90,450	72,480
2등급	83,910	67,250
3등급	79,240	62,000
4등급	79,240	62,000
5등급	79,240	62,000

주간보호(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별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구분	시간	금액	최대횟수	사용금액	본인부담		
					15%	9%	6%
1등급	120분 이상	42,160	54	2,276,640	341,490	204,890	136,590
	150분 이상	49,160	46	2,261,360	339,200	203,520	135,680
	180분 이상	55,350	41	2,269,350	340,400	204,240	136,160
	210분 이상	61,670	37	2,281,790	342,260	205,360	136,900
	240분 이상	68,030	33	2,244,990	336,740	202,040	134,690
2등급	120분 이상	42,160	49	2,065,840	309,870	185,920	123,950
	150분 이상	49,160	42	2,064,720	309,700	185,820	123,880
	180분 이상	55,350	37	2,047,950	307,190	184,310	122,870
	210분 이상	61,670	33	2,035,110	305,260	183,150	122,100
	240분 이상	68,030	30	2,040,900	306,130	183,680	122,450
3등급	120분 이상	42,160	35	1,475,600	221,340	132,800	88,530
	150분 이상	49,160	30	1,474,800	221,220	132,730	88,480
	180분 이상	55,350	26	1,439,100	215,860	129,510	86,340
	210분 이상	61,670	24	1,480,080	222,010	133,200	88,800
	240분 이상	68,030	21	1,428,630	214,290	128,570	85,710
4등급	120분 이상	42,160	32	1,349,120	202,360	121,420	80,940
	150분 이상	49,160	27	1,327,320	199,090	119,450	79,630
	180분 이상	55,350	24	1,328,400	199,260	119,550	79,700
	210분 이상	61,670	22	1,356,740	203,510	122,100	81,400
	240분 이상	68,030	20	1,360,600	204,090	122,450	81,630
5등급	120분 이상	42,160	27	1,138,320	170,740	102,440	68,290
	150분 이상	49,160	23	1,130,680	169,600	101,760	67,840
	180분 이상	55,350	21	1,162,350	174,350	104,610	69,740
가족케어	60분	24,580	20	491,600	73,740	44,240	29,490
	90분	33,120	30	993,600	149,040	89,420	59,610
			31	1,026,720	154,000	92,400	61,600

방문목욕

방문목욕	금액	본인부담			방문간호	금액	본인부담		
		15%	9%	6%			15%	9%	6%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9	15분 이상~30분 미만	41,710	6,257	3,754	2,503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77,970	11,696	7,017	4,678	30분 이상~60분 미만	52,310	7,847	4,708	3,139
차량미이용 60분 이상	48,690	7,304	4,382	2,921	60분 이상	62,930	9,440	5,664	3,776